

김해 주촌 두산 위브더제니스 입주자모집공고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8.11.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한빛건설산업(주)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2017년 6월 30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이 주택은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07.03.개정)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개정(2013.5.31)으로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김해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6.08.11. 이전거주)가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및 다자녀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완납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텔하우스(<http://www.juchon-zenith.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텔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101조 등에 의거 청약통장 및 분양권의 불법거래 적발시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되어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호(2017. .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587-9번지 일원
- 대지면적: 40,768.4㎡ (공동주택 39,152.10㎡, 근린생활시설 1,616.30㎡)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9개동, 총 851세대(특별공급 총 28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기관추천 85세대/다자녀 85세대/신혼부부 85세대/노부모부양 26세대)>
- 공급대상

(단위:㎡,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타입	주택형별계약면적					타입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 장 포함)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17000943-01	67.9180	67	67.9180	20.0766	87.9946	33.7075	121.7021	38.36	57	6	6	6	2	37	2
	2017000943-02	77.8760	77A	77.8760	23.3821	101.2581	40.7711	142.0292	43.98	132	13	13	13	4	89	5
	2017000943-03	77.9232	77B	77.9232	22.4521	100.3753	35.2609	135.6362	44.01	154	15	15	15	5	104	6
	2017000943-04	84.9765	84	84.9765	24.7099	109.6864	39.7746	149.4610	47.99	508	51	51	51	15	340	18

-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포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17호,제28호),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제외합니다.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관련)

구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사업주체가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 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의 다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 청약신청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분의 동·호수 배정추첨을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 동호추첨 : 특별공급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게 1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0% 이내) : 8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김해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을 말함]으로서 해당 기관장에 추천을 받은 자 [장애인,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입주자저축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지역 구분없이 청약이 가능함] 단, 경쟁이 있는 경우 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28호) 및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전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 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우수 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김해시장이 정하고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청약경쟁률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의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 대상세대 : 85세대

구분	대상세대	67	77A	77B	84	비고
세대수	85	6	13	15	51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85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김해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혼,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경쟁이 있는 경우 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타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미만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포함)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세대 : 85세대

구분	대상세대	67	77A	77B	84	비고
세대수	85	6	13	15	51	-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 점 요 소	총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한부모가족	5	
무주택 기간(4)	20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 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 사항

-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0% 이내) : 8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김해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경쟁이 있는 경우 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합니다.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630,275원) + {1인당 평균소득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세대 : 85세대

구분	대상세대	67	77A	77B	84	비고
세대수	85	6	13	15	51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주택 건설량의 3% 이내) : 2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김해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함)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합니다.(건분주택 비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상세대 : 26세대

구분	대상세대	66	74A	77B	84	비고
세대수	26	2	4	5	15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일반공급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2. 일반공급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김해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제외동포(제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상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관련)

구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7.08.11.)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건분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합니다.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김해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로 청약 신청 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 각 주택형 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청약자격(거주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관련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가점접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가입자 본인은 제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6호는 적용하지 않음)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특별공급 제외) 청약 시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노약자·장애인 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7.08.25.(금)]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환불 장소

구분	환불장소	비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됩니다.

-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합니다.

3.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고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2017.08.16.(수) 10: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김해 주촌 두산위브더제니스 견본주택 (김해시 부원동 555-4번지)	
일반공급	1순위	• 2017.08.17.(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2you.com)	
	2순위	• 2017.08.18.(금)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2you.com)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신청자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0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함)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민등록증	대리인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7.08.16. (수) 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7.08.24. (목)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사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7.08.29. (화) ~ 2017.08.31. (목) (3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7.08.24. (목)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순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7.08.24. ~ 2017.09.02.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2017.06.15 ARS 1369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08.24.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 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p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 현재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5. 계약 체결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다자녀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신혼부부	○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지속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1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계약금은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 체결 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어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원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8.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10.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11.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본 주택에 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8.11.) 청약가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공급 신청자 및 주택공급을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자(제 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세대에 속한자"라 한다)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내에서 두 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 임대주택에 먼저 당첨이 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계약체결 기간: 2017.08.29.(화) ~ 2017.08.31.(목), 3일간 (시간 : 10:00 ~ 16:00)
- ▶ 계약체결 장소 : 당 건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주택전시관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 ▶ 계약금 납부방법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 계좌에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입금자 표기의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홍길동(1010101)]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	경남은행	207-0059-2006-06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당첨 부적격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상기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종료 후 미계약세대는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임의 공급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는(중도금 대출 무이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내에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별도의 약정(통지) 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외국인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출관련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 없이 분양가 포함으로 제공되므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포함 품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시공위치	업체명	설치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
67	선택1	거실+침실1	엘지/삼성	370,000	3,330,000	3,700,000
	선택2	전실(거실, 침실1,2,3)	엘지/삼성	640,000	5,760,000	6,400,000
77A,77B	선택1	거실+침실1	엘지/삼성	376,000	3,384,000	3,760,000
	선택2	전실(거실, 침실1,2,3)	엘지/삼성	674,000	6,066,000	6,740,000
84	선택1	거실+침실1	엘지/삼성	407,000	3,663,000	4,070,000
	선택2	전실(거실, 침실1,2,3)	엘지/삼성	717,000	6,453,000	7,170,000

- 주방 옵션 가구, 가전 설치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업체명	설치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	
67 / 77B / 84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전자	660,000	5,940,000	6,600,000	
	빌트인 김치 냉장고 + 키큰장	삼성전자	150,000	1,350,000	1,500,000	
	인덕션 1구 + 라디언트 2구	삼성전자	99,000	891,000	990,000	
77A	수납공간 강화형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전자	660,000	5,940,000	6,600,000
		빌트인 김치 냉장고 + 키큰장	삼성전자	150,000	1,350,000	1,500,000
		인덕션 1구 + 라디언트 2구	삼성전자	99,000	891,000	990,000
	조리공간 강화형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전자	660,000	5,940,000	6,600,000
		빌트인 김치 냉장고	삼성전자	120,000	1,080,000	1,200,000
		인덕션 1구 + 라디언트 2구	삼성전자	99,000	891,000	990,000

- 유상옵션 납부계좌 안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KEB하나은행	206-910007-13705	두산건설(주)	

-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견본주택 67,77A에는 엘지전자 제품이, 84에는 삼성전자 제품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 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별(엘지,삼성) 선택이 가능하며,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가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고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동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 시공상의 이유로 지상층 골조작업 시작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 순서에 의한 기본선택 품목 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선택안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각실 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외기에 면한 PL창호(시트래핑 제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 루버
바닥	온돌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타일, 래핑, 시트 및 벽패널류)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동림(몰딩 포함)	천장틀위 석고보드, 소방시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장재(천장틀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철크, 욕실바닥 및 벽타일	조적, 방수, 미장, 전기 설비 배관/배선
주방 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작업조명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룩탑,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전기오븐, 주방액정TV 등)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일반 가구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수납선반, 수전류	-
조명 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67	77A	77B	84
금액	19,607,368	22,562,770	22,366,104	24,440,820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분양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약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미장**,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을 위한 각 종 틀공사, 보강공사는 입주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발코니 개별 확장하는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공급금액의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제도 실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19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당 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이 본 공고상의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

■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시행자인 한빛건설산업(주)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한빛건설산업(주)이고, 두산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한빛건설산업(주)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한빛건설산업(주)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한빛건설산업(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에 따라 적용됨**

5 **기타 유의사항**

■ **일반 공통**

- 당 사업은 2016년 12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www.juchon-zenith.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일부 주동에 한하여 주동의 하부에 일부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립),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외벽 색채 및 디자인은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리벽은 전시용이므로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선택할 수 없음

- 분양 시 홍보물 및 모형 CG에 표현된 커뮤니티, 단위세대 평면도, 집기류, 운동시설, 가구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며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성)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은 인허가청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음
-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의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는 67㎡, 77㎡A, 84㎡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지붕 및 옥탑에 위생안테나, 피뢰침, 저수조, 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 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음
- 건축물 측면에 측비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장애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주변 도시계획예정도로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도로 개설 시기 및 변경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중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불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본공사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체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건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포츠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건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건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임
- 건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스위트, 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은 천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 및 대피공간 또는 유사구조가 별도로 설치됨
- 세대내의 대피공간 및 유사구조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 일부발코니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됨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TYPE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조명기구,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위생기구, 악세사리, 바닥 배수구, 수전, 선흠통 등은 위치 및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마감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리벽은 전시용이며, 본공사시 시공되지 않으며, 별도 선택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됨
- 1층의 층고는 동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나 1층 세대 천장고는 기준층과 동일하게 계획됨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보조주방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2 도어 후면 벽체에 설치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단지 내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에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개폐가 불가한 창호로 시공됨. 단, 일부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됨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공간에 설치되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해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배치 상 일부 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환풍,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그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이 지정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수목식재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잔디 또는 초화류만

- 식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저층세대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 주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산책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의외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및 채광용 천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각 세대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람)
 - 문주 등 외부시설물, 아파트 외관 및 색채, 동현관 및 저층부 석재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부대복리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의 경우 인접세대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 조명, 배기덕트,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난간, 기타 부착 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및 데크 등과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 현황 상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의외곽 일부에 옹벽 또는 돌쌓기 등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 상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람(현장여건에 의해 추가 설치 및 삭제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용 실외기가 1층 외부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공간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가 설치되는 부분은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단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사용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됨
- 경관조명,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승인조건의 권고사항에 의거 일부 동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경우 카탈로그를 우선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본 사업지 남측에 대로가 인접되어 있어 도로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사업계획승인조건 : 주변간선시설표기 = 도로 표기 요망)
- 도시계획도로(중로2-A, 중로2-B)는 입주시 개설 완료 예정이며, 인허가 과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명확한 도로명 확인 요망)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당 사업부지 외부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도로 개설 시기 및 변경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의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가야초등학교로, 중학생은 제10학교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통학편의대책(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신단차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 혐오시설 사항

- ▶ 사업부지 인근에 악취발생원인 돼지축사(사실여부 재확인)가 있어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초래될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후 계약 하시기 바람려 이는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음.
- ▶ 사업예정지로부터 직선 50m 반경이내 “공장” 중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없으나, 인근 반경 1km이내에

측사 및 소규모 제조업 등이 다수 존재하여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정압기 (단지 주출입구 우측 도로변)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
고효율기자재	적용	-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절수 설비	적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175,420,350,000원	제 01282017-101-0010700호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용어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금융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VAT포함)

구 분	감 리 자	감리금액
주택건설	(주)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2,221,104,710
전 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569,130,000
통신·소방	(주)나이스에너지엔지니어링	₩251,9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등록번호
사업주체	대한토지신탁(주)	
사업위탁자	한빛건설산업(주)	
시공사	두산건설(주)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555-4번지, 김해 주촌 두산위브더제니스 건본주택

■ 분양안내 홈페이지 : <http://juchon-zenith.co.kr>

분양 문의 : 1522-8500